

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(판매기업용 - 상환청구권 있음)

1. 주요 개정 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(판매기업용 - 상환청구권 있음)</p> <p>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 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 괄 한 도 거 래 약 정 서 (기업용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>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의 포괄한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</p> <p>제 1 조 거래조건 ~ 제 11 조 기타 특약사항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_____ (이하 "본인" 또는 "협력기업"이라 합니다)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_____ 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합니다)의 발주서를 근거로 하는 은행의 「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」을 위한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포괄한도거래약정서(이하 "원 약정서"라 합니다)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, 은행의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p> <p>제 1 조 (용어의 정의) ~ 제 4 조 (개별대출의 실행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(판매기업용 - 상환청구권 있음)</p> <p>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 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 괄 한 도 거 래 약 정 서 (기업용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좌 등)</p> <p>제 1 조 거래조건 ~ 제 11 조 기타 특약사항 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좌 등)</p> <p>제 1 조 (용어의 정의) ~ 제 4 조 (개별대출의 실행)</p>	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p> <p>제 5 조 (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p> <p>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을 할 경우, 은행은 본인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 여신약정(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, 상생 e-안심팩토링대출, 상생일반구매론 등)에 따른 대출이나 선입금(이하 “확정채권대출”이라 합니다)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구매기업이 납품기한까지 채권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서 조건에 따라 지급확약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발주서만기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매출채권이 자동확정되며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금지급일로 확정됩니다.</p> <p>③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대금지급일에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전항의 개별대출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, 그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, 상환 전까지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⑤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어 채권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채권확정하거나, 제 2 항 부터 제 4 항에 따라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확정채권대출의 한도부족이나 미약정 또는 약정기한 경과 2. 채권확정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개별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확정채권대출 이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. 기타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<p>⑥ 개별대출금의 상환일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원 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제 6 조 (대출의 제한) ~제 9 조 (추가약정의 효력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 가 약 정 서 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p>제 5 조 (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p> <p>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을 할 경우, 은행은 본인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 여신약정(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, 상생 e-안심팩토링대출, 상생일반구매론 등)에 따른 대출이나 선입금(이하 “확정채권대출”이라 합니다)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구매기업이 납품기한까지 채권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서 조건에 따라 지급확약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발주서만기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매출채권이 자동확정되며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금지급일로 확정됩니다.</p> <p>③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대금지급일에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전항의 개별대출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, 그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, 상환 전까지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.</p> <p>⑤ <u>구매기업에게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 11 조의 2 에서 정한 거래정지 사유 또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소멸되고, 동 사유 발생 즉시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은 은행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⑥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어 채권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채권확정하거나, 제 2 항 부터 제 4 항에 따라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확정채권대출의 한도부족이나 미약정 또는 약정기한 경과 2. 채권확정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개별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확정채권대출 이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. 기타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<p>⑦ 개별대출금의 상환일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원 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>제 6 조 (대출의 제한) ~제 9 조 (추가약정의 효력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 가 약 정 서 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</p>	<p>약관해석의 오해 방지를 위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삽입</p> <p>항 체하</p> <p>항 체하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본인은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」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포괄한도거래약정(이하 "원 약정서"라 한다)에 추가하여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</p> <p>제 1 조 (서류의 제출) ~ 제 3 조 (개별대출의 실행) (생 략)</p> <p>제 4 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p> <p>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.</p> <p>② 제 1 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,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 (신 설)</p> <p>③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(또는 결제)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(본인 포함)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분,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,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 상환일 전일까지 원 약정서 제 1 조 제 1 항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</p> <p>제 5 조 (대출의 제한) ~ 제 10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	<p>(작 등)</p> <p>제 1 조 (서류의 제출) ~ 제 3 조 (개별대출의 실행) (작 등)</p> <p>제 4 조 (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)</p> <p>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.</p> <p>② 제 1 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,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③ <u>거래처(구매기업)에게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 11 조의 2 에서 정한 거래정지 사유 또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소멸되고, 동 사유 발생 즉시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은 은행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④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(또는 결제)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(본인 포함)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분,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,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⑤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 상환일 전일까지 원 약정서 제 1 조 제 1 항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</p> <p>제 5 조 (대출의 제한) ~ 제 10 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 (작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</p>	<p>약관해석의 오해 방지를 위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삽입</p> <p>항 체하</p> <p>항 체하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						
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_____(이하 "판매기업"이라 합니다)은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, 판매기업이 _____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</p> <p>제 1 조 (계약의 목적) ~ 제 7 조 (특약사항) (생략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7 448 999 655"> <tr> <td data-bbox="107 448 808 655">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통합약정서(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, 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, 이를 약정함.</td> <td data-bbox="808 448 887 655">본인</td> <td data-bbox="887 448 999 655">(인)</td> </tr> </table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7 692 999 916"> <tr> <td data-bbox="107 692 808 916">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.</td> <td data-bbox="808 692 887 916">본인</td> <td data-bbox="887 692 999 916">(인)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>채권양수인(은행)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</p> <p>본인(채무자 겸 채권양도인) 주소</p> <p>구매기업(중심기업) 정보 업체코드 중심기업명 중심기업사업자번호</p>	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통합약정서(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, 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, 이를 약정함.	본인	(인)	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.	본인	(인)	<p>(좌 등)</p> <p>제 1 조 (계약의 목적) ~ 제 7 조 (특약사항) (좌 등)</p> <p>(좌 등)</p> <p>(좌 등)</p> <p>(좌 등)</p> <p>20 년 월 일</p> <p>(좌 등)</p> <p>(좌 등)</p> <p>(좌 등)</p>	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통합약정서(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, 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, 이를 약정함.	본인	(인)						
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.	본인	(인)						

2. 개정시행일 : 2017년 9월 29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: 적용함.